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가보조금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이 영업정보에 대한 서류제출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의 연료구매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하는 한편, 신용불량 등으로 인한 계좌 압류 등으로 유가보조금을 받기 어려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명의의 계좌로 유가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영업정보”란 여객의 택시이용에 따라 발생한 운임 및 요금, 운행 일시 등의 정보를 말한다.

제15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에 따라 택시 유가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정보에 관한 관할관청의 서류제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6조제3항 중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신청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 명의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료비를 부담한 자 명의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좌압류 또는 신용불량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배우자·직계가족(가

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자필 위임장을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명의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 중 “제18조제1항제2호부터제5호까지 및 제22조제1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연료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중지된 주유업자에게 유류·천연가스·수소를 구매한 경우(단, 최초 서류신청분에 한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2조제1항제5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연료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중지된 주유업자에게 유류·천연가스·수소를 구매한 경우(단, 최초 서류신청분에 한한다)
4. 택시 유가보조금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에 따라 명령한 영업정보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모두 제출한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1. (생략)</p> <p><u><신 설></u></p>	<p>제3조(정의)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u>“영업정보”란 여객의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한 운임 및 요금, 운행일시 등의 정보를 말한다.</u></p>
<p>제15조(연료구매카드 사용제한 및 거래정지)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7. (생략)</p> <p><u><신 설></u></p>	<p>제15조(연료구매카드 사용제한 및 거래정지) ①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에 따라 택시 유가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정보에 관한 관할관청의 서류제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u></p>
<p>② · ③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방법) ① · ② (생략)</p> <p>③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서면신청 없이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p>	<p>제16조(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내역을 확인한 후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제17조(유가보조금 지급 청구권자) ① (생략)
② 삭제
<신설>

<신설>

한다. 다만, 제19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유가보조금 지급 청구권자) ① (현행과 같음)

③ 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 명의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료비를 부담한 자 명의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좌압류 또는 신용불량자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배우자·직계가족(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자필 위임장을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명의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p>④ · ⑤ (생략)</p>	<p><u>여관할관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에 따라 명령한 영업정보 관련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모두 제출한 경우</u></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	---